

의안번호	2126512
의 퇴 인	송기헌의원
회 답 일	2024.02.27.
추 계 번호	24B0154

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추계결과, 환경부장관이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7억 5,000만원 및 2029년 36억원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81억 5,000만원(연평균 36억 3,000만원)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 단축(안 제3조제4항)	150	-	-	-	-	150	30
악취정밀조사 실시 (안 제4조의2 신설)	3,600	3,600	3,600	3,600	3,600	18,000	3,600
추가재정소요	3,750	3,600	3,600	3,600	3,600	18,150	3,630

- 주 1. 동 추가재정소요는 전액 국비임
 2.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을 위한 연구·용역 비용과 악취정밀조사 실시 지역의 개소수 및 악취정밀조사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
 3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 4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 5.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 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	• 환경부장관은 제1항¹⁾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수립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(제4항) →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•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(제5항 신설)	의무규정
2	안 제4조의2 신설 (악취정밀조사)	•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,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(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거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	재량규정

		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•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,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정밀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• 그 밖에 악취정밀조사에 필요한 내용·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(제4항)	
--	--	--	-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
1	안 제3조제4항 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 -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 단축	○	•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경우 예상되는 연구·용역 비용을 추가재정소요로 추계
2	안 제3조제5항 신설 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 - 악취방지 종합시책 시행에 필요한 조치 수행	×	• 안 제3조제5항은 환경부에서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. 다만 향후 중앙행정기관에서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시행을 위해 수행할 사업의 내용 및 범위와 구체적인 절차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가 곤란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가 곤란함
3	안 제4조의2 신설 (악취정밀조사)	○	• 현행법에 따라 실시중인 악취실태조사의 대상 지역 개소수 및 실태조사 단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
- 1) 「악취방지법」 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사책에 대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며,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·연구,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 단축(안 제3조제4항)

- 안 제3조제4항은 환경부장관이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을 위한 연구·용역 비용이 추가재정소요로 예상됨
 - 환경부 제출자료인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을 위한 연구·용역 및 2022년에 수행한 유사 연구·용역을 참조하여 추계 첫해인 2025년에 1억 5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
 - ‘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(2019년~2028년) 수립을 위한 연구 추진’(2018.3.~11, 9,400만원)
 - ‘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연구’(2022년, 2억 3,000만원)

-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억 5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 단축 비용: 2025~2029년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 단축 비용	150	-	-	-	-	150

주.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나. 악취정밀조사 실시(안 제4조의2 신설)

- 안 제4조의2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거나 악

취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- 법 제4조²⁾에 따라 환경부장관,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및 그 외 지역에 대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환경부의 관련 예산 현황은 [표 3]과 같음.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의 개소수는 2023년 기준 6개소³⁾이므로 1개 지역의 실태조사 비용은 약 1억 8,000만원임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할 경우 1개 지역의 악취정밀조사 단가는 1억 8,000만원으로 가정
 - 환경부의 최근 3년간 관련 예산 현황인 [표 3]을 참고하여 악취정밀조사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※ [참고자료1] 악취실태조사 개요
- ※ [참고자료2]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

[표 3] ‘악취실태조사’ 사업 예산 현황: 2022~2024년

	2022	2023	2024
악취실태조사	1,079	1,079	1,079

(단위: 백만원)

- 주 1. 환경개선특별회계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(1633-303)의 세부사업임(한국환경공단 대행사업비)
 2. 악취취약지역(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)에 대해 악취발생원인 규명 및 발생 악취 확산 예측 등 정밀조사 수행 실시

- 전국의 악취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약 50여건⁴⁾이 신청되고 있으며, 환경부에 따르면 이중 개정안에 따른 악취정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연간 약 20여개소로 추정된다는 입장임. 따라서 개정

- 2) 「악취방지법」 제4조(악취실태조사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(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(이하 "대도시의 장"이라 한다)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②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③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3) 경기 시흥시, 경기 여주시, 전북 정읍시, 전남 영광시, 경남 김해시, 강원도 철원군
- 4) 악취실태조사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현황(환경부 대기관리과 제출자료)
 - 2019년: 54개소, 2020년: 65개소, 2022년 85개소, 2023년 45개소, 2024년 37개소

안에 따라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할 경우 대상 지역은 연간 20개소로 가정

- 현행법에 따른 악취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후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환경부에서 선정하여 국비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악취정밀조사도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

□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80억원으로 추계됨

[표 4] 악취정밀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대상 지역(A, 개소)	20	20	20	20	20	100
실태조사 단가(B, 백만원)	180	180	180	180	180	-
합 계 (C=A×B, 백만원)	3,600	3,600	3,600	3,600	3,600	18,000

주.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일부추계) 추계결과, 환경부장관이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7억 5,000만원 및 2029년 36억원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81억 5,000만원(연평균 36억 3,000만원)이상으로 추계됨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 단축(안 제3조제4항)	150	-	-	-	-	150	30
악취정밀조사 실시 (안 제4조의2 신설)	3,600	3,600	3,600	3,600	3,600	18,000	3,600
추가재정소요	3,750	3,600	3,600	3,600	3,600	18,150	3,630

주 1. 동 추가재정소요는 전액 국비임

2.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을 위한 연구·용역 비용과 악취정밀조사 실시 지역의 개소수 및 악취정밀조사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

3.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

4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5.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지수현	이유미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지수현	02-6788-3735	zisu37@nabo.go.kr

[참고자료1] 악취실태조사 개요⁵⁾

□ 조사 대상지역

- (시도) 악취관리지역의 실태를 주기적(매년)으로 조사(법 제4조제1항)
- (환경부· 시도)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조사(법 제4조제3항)

□ 악취실태조사 절차 및 방법

- 조사기관 선정: 한국환경공단, 악취검사기관 등 위탁
- 조사지역 기초조사: 악취민원, 악취배출사업장 현황, 기상자료 등
- 조사기간 및 지점: 대기질(반기 1회 이상, 4개 지점 이상), 악취배출사업장 악취 측정(연 1회 이상, 악취 배출구 또는 부지경계)
- 조사항목: 복합악취, 지정악취물질, 기상요소 등

□ 악취실태조사 현황

-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총 26개 지역에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음.

연도	악취실태조사 신청 및 선정 결과	
	지방자치단체 신청 지역 개소수	선정지역 개소수
2018	시범사업으로 별도 신청 없음	3
2019		3
2020	54개	4
2021	65개	4
2022	85개	6
2023	45개	6
2024	37개	6 (실시중)

5) 환경부 대기관리과

[참고자료2]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(2024.2. 기준)⁶⁾

연번	시·도	시군구	지정일자	지정지역		지정면적	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고시일
1	울산	남구, 북구, 동구, 울주군	2005-3-17	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		46,271천㎡	2005.07.07
2		울주군	온산국가산업단지		24,659천㎡	2005.07.07	
3			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476-1, 산405-3		10천㎡	해당없음	
4			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(11개필지)		20천㎡	해당없음	
5	경기	평택시	2005-05-16	아산국가산업단지 포송지구		5,681천㎡	2012.12.28
6		시흥시		시화국가산업단지	시흥시	16,443천㎡	2012.12.28
		안산시			안산시	4,424천㎡	2012.12.28
7				반월국가산업단지		15,374천㎡	2012.12.28
8		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		1천㎡	2012.12.28		
9		오산시	2011-01-10	오산시 누읍동 일반공업지역		460천㎡	2012.12.28
10		화성시	2016-12-05	발안산업단지		1,268천㎡	2017.12.1
11		평택시	2018-02-13	평택일반산업단지(세교)		535천㎡	2018.2.13
13			2023-08-23	독곡동 일원 4필지(축사2개소)		8,474㎡	해당없음
			용인시	2018-06-04	포곡읍 신원리, 유운리 일원(축사 47, 레스피아)		247천㎡
14		충남	서산시	2006-1-20 (2020-7-6통합)	대산공업단지(3곳) - 대산일반산업단지 - 대산3일반산업단지 - 대죽일반산업단지 - 대산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 - 대죽자원비축국가산업단지 - 현대대죽일반산업단지 - 씨지앤대산전력일반산업단지 - 독곡리 1 외 - 대죽리 10-1 외		17,052천㎡
	2017.12.29						
	2017.12.29						
	2017.12.29						
15		당진시	2010-11-	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		2,776천㎡	2017.12.29

6) 환경부 대기관리과

16			30	송산일반산업단지	5,539천㎡	2017.12.29
17		남동구		남동국가산업단지·논현동·고잔 동 지역	10,545천㎡	2006.1.24
18			2006-01-	서부지방산업단지	938천㎡	2006.1.24
19			24	가좌동·석남동·원창동 지역	9,171천㎡	2006.1.24
20		서구		백석·오류동 일원	15,507천㎡	2006.1.24
21			2012-10-	검단일반산업단지	2,250천㎡	2012.10.2
22			02			
22		동구	2011-12-	화수동 일원	273천㎡	2011.12.31
23			13			
23			2012-10-	송현동 일원	329천㎡	2012.10.2
24			02			
24		부평구	2015-08-	부평대로 233 일원(청천동)	906천㎡	2015.8.24
25			24			
25		중구	2016-12-	북성포길 13 등 북성동 일원	638천㎡	2016.12.12
26			12			
26			2018-11-	인천지방산업단지(미추홀구 도화동 일부)	577천㎡	2018.11.5
27			05			
27		미추홀구	2018-11-	인천기계산업단지(미추홀구 도화동 일부)	245천㎡	2018.11.5
28			05			
28	부산	사하구	2006-04-	부산괴력수산물가공업협동조 합	15천㎡	2017.1.4
29			26			
29		완주군	2007-10-	우리밀축산영농조합(축산시설)	27천㎡	2016.5.9.
30			12			
30	전북			익산제1산업단지	1,334천㎡	2016.5.9.
31		익산시	2014-01-			
31			24	익산제2산업단지	3,309천㎡	2016.5.9.
32						
32	대전	대덕구	2008-01-	대전 1,2산업단지 등	2,038천㎡	해당없음
33			01	대전 3,4산업단지 등	3,491천㎡	해당없음
34						해당없음
34	강원	영월군	2008-04-	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일원(7개필지)	102천㎡	해당없음
35			28			
35		의성군	2008-12-	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446-1, 467, 467-2	7천㎡	해당없음
36			04			
36	경북	경주시	2022-05-	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340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	2168천㎡	해당없음
37			12			
37		창원시	2013-07-	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	17,242천㎡	해당없음
38			01			
38			2020-02-	주촌면 선지리 214 외 26필지	28천㎡	해당없음
39			17	주촌면 원지리 116 외 39필지	44천㎡	해당없음
40						
40		김해시	2020-10-	부곡·유하동 일반공업지역 일부	758천㎡	해당없음
41			13			
41			2021-07-	진영·본산리준공업지역	1,001천㎡	2021.05.21

			09			
42		함안군	2021-01-01	칠서일반산업단지	3,067천㎡	해당없음
43			2023-05-08	함안면 괴산리 673번지 외 57필지(양돈시설 11개소)	74.8천㎡	해당없음
44		여수시	2013-12-12	여수화양농공단지	96천㎡	2013.12.12
45	전남	여수시	2019-05-02	여수국가산업단지	32,550천㎡	2013.12.12
46		여수시	2019-05-02	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	4,156천㎡	2013.12.12
47		제주시	2018-03-23	한림읍, 애월읍, 구좌읍, 한경면 노형동 등(축사 53)	496천㎡	2016.5.13
48	제주	서귀포시	2018-03-23	대정읍, 남원읍, 중문동 등(축사 6)	65천㎡	2016.5.13
49		서귀포시	2019-07-19	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지역 44개 악취배출시설(양돈 축산시설)	353천㎡	2016.5.13